

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, 아리수물 미셔요

I-SEOUL-U

# 서울특별시

서울시 홈페이지  
seoul.go.kr

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  
(경유)

제목 잠실광역환승센터 상가 입찰결과 통보 관련 회신

1. 서울교통공사 복합개발처-8(2017.6.1.)호와 관련입니다.
2. 잠실광역환승센터 상가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매회 예정가격을 낮춰 입찰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따라 1개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도 해당 응찰자를 낙찰자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## 서울특별시



주무관 최종규

주차관리팀장 김인호

주차계획과장 06/07  
오진완

합조자

시행 주차계획과-7312 (2017.06.07.)

접수 복합개발처-82 (2017.06.07.)

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주차계획과/www.seoul.go.kr

전화 02-2133-2368 전송 / / 비공개

아리수솨 환경을 품다, 수돗물솨 건강을 담다.

I·SEOUL·U  
이·서울·유

# 서울특별시

서울시 홈페이지  
  
seoul.go.kr

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  
(경유)

제목 잠실광역환승센터 내 부대시설 임대 관련 협조 요청

1. 주차계획과-7312(2017.6.7.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잠실광역환승센터 내 부대시설 일부(점포번호: 216-131-102,면적: 50.1㎡)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검토하고 있으니, 현재 진행 중인 부대시설 임대 입찰에서 해당 시설을 제외하고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서울특별시



주무관 배경진

주차관리팀장 김인호

주차계획과장 09/25  
이병수

협조자

시행 주차계획과-3952 (2017.09.25.)

접수 사업수행지원센터-1110 (2017.09.25.)

우 /

전화 전송 / / 부분공개 (5)

## 5 예정가격의 체감

### 가. 근거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5조, 제33조

### 나. 적용

1) 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경우

#### 가) 행정재산

- 세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어 조정

#### 나) 일반재산

- 세번째 입찰부터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최초 대부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어 조정

◆ 2회 걸쳐 입찰을 한 결과 유찰된 후, 사용 희망자(수의계약)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하여야 함

- 수의계약은 반드시 해당 회차 입찰이 유찰된 이후 적용하여야 함

◆ 2회 걸쳐 입찰을 한 결과 유찰된 후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 3회차 부터는 최초 예정가격을 체감하여 입찰 실시

- 이 경우 매회차 마다 입찰을 한 결과 유찰된 후 사용희망자가 있는 경우 해당 회차의 체감하여 산정한 예정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함

◆ 매 1회 체감시 마다 최초 예정가격의 10%이내의 금액만큼 체감하여 최고 50%까지 할 수 있음

※ (사용수익허가 예시) 최초 예정가격이 50,000만원인 경우 매 1회 체감시 마다 최초 매각 예정가격에서 5,000만원 범위 내에서 체감하여야 함(1회 45,000만원, 2회 40,000만원, 3회 35,000만원, 이하 동일)

구분		회차	경쟁입찰시	수의매각시	비고
예정가격	5,000만원				
		1회	50,000만 원	해당없음	100%
		2회	50,000만 원	50,000만 원 이상	100%
		3회	45,000만 원	45,000만 원 이상	90%
		4회	40,000만 원	40,000만 원 이상	80%
		⋮	⋮	⋮	⋮
		미지막회(7회)	25,000만 원	25,000만 원 이상	50%

◆ 3회차부터 체감을 하여 낙찰자가 결정이 된 후 그 낙찰자가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(포기)한 경우, 낙찰된 당시의 체감된 예정가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